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
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과 관련하여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을 정하고 있음(제54조제4호).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 각호로 정한 구비서류에는 해당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하지 않고 있어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바, 본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조회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하여 등록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. 아울러,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 등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,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에 관한 각종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제반의 규정을 정비함.

3. 주요내용

가.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‘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’ 추가
(안 제66조의3 제2항제5호)

- 법 제54조제4·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

-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도록 첨부서류 추가
- 나. 보완기간 연장 및 보완기간의 처리기간 불산입 근거 신설 (제66조의3 제4항단서)
- 다. 등록, 변경등록, 양도·양수·상속신고, 합병신고, 휴업·폐업·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·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 신설 (제66조의3 제6항)
- 라. 등록의 처리기간 명시 및 고시로 위임한 등록증 교부의 근거규정 신설 (제66조의3 제7항)
- 마.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(제66조의3 제1·2항)
- 바. 등록·신고 및 결격사유 확인 등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마련(제70조의2 본문 및 제3·4호)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가능한 사무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, 변경등록, 양도·양수·상속·합병 신고, 휴업·폐업·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및 등록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신설
- 사. 기타 조문 정비 (제66조의3 제1항본문)
-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‘신청인’으로 법령상 약어 추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자(이하 “신청인”)”으로, “등록신청서”를 “등록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류”를 “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

제66조의3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7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66조의3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, 변경등록, 양도·양수·상속신고, 합병신고, 휴업·폐업·법인해산신고에 관한 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한다.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고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과학기

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신청인이 변경등록, 양도·양수·상속신고, 합병신고를 한 때에도 이와 같다.

제70조의2 중 “방송통신위원회의”를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”로, “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, 열람, 검사 등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, 변경등록, 양도·양수·상속·합병 신고, 휴업·폐업·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
4. 법 제54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5.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, 열람, 검사 등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6조의3(등록절차)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<u>등록신청서</u>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<u>서류</u>를 첨부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<신 설> ③ (생략)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<u>단서 신설</u>>	제66조의3(등록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<u>자(이하 “신청인”)</u>는 ----- <u>등록신청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</u>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</u>----- 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단,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7항의 처리기간에 산</u>

⑤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70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
방송통신위원회(제70조에 따라
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탁
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법 제64
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,
열람,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
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
입하지 않는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,
변경등록, 양도·양수·상속신고,
합병신고, 휴업·폐업·법인해산
신고에 관한 신청서 및 신고서
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
시로 정한다.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
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고
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신청인
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
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
한다. 신청인이 변경등록, 양도·
양수·상속신고, 합병신고를 한
때에도 이와 같다.

제70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
방송통신위원회의 -- 다음 각
호의 -----

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 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2. 삭 제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[illegible]

3.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
서비스제공자 등록, 변경등록,
양도·양수·상속·합병 신고, 휴
업·폐업·법인해산 신고에 관
한 사무

4. 법 제54조에 따른 통신과금
서비스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
에 관한 사무

5.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, 열람, 검사 등에 관한 사무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668